

■ 당첨자 자격확인서류 제출방법

서류제출 기한	2022년 1월 4일(화) ~ 1월 15일(토) 16시 도착분까지 (반드시 지정된 기간내 서류를 접수하시길 바랍니다.)
제출방법	건본주택 방문접수
수신처	경상북도 경주시 용강동 800-19 (대표번호 1800-3430)
유의사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신종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하여 마스크 미착용자 및 체온 37.5도 이상 고객은 방문이 불가합니다.</li> <li>• <b>기한 내에 아래 자격서류를 발급하시어 건본주택 방문 후, 부적격사항 및 적격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.</b></li> <li>• 신청자의 착오 등으로 신청내용과 제출서류가 상이할 경우 당첨을 취소하며, 부적격당첨에 따른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.</li> </ul>

■ 생애최초 특별공급 제출 서류

구분	서류유형		해당서류	발급 기준	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
	필수	추가 (해당자)			
생애최초 특별공급 당첨자 자격 확인서류	○		무주택 서약서	본인	• 건본주택 비치
	○		신분증	본인	•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, 여권
	○		인감증명서	본인	• 용도에 「아파트 계약용」으로 직접 기재(반드시 본인발급용으로 발급진행)
	○		인감도장	본인	• 인감증명서 상의 도장과 일치해야 함 •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계약 시 서명으로 대체(본인 직접 계약에 한함)
	○		주민등록표등본	본인	•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, 주민등록번호 (뒷자리 포함), 과거주소 변동사항,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"전체포함"으로 발급
	○		주민등록표초본	본인	• 주민등록번호 (뒷자리 포함), 과거주소변동사항 (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), 세대주 성명, 관계 등 "전체포함"으로 발급
	○		가족관계증명서	본인	•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, 주민등록번호 (뒷자리 포함) 전부 공개, "상세"로 발급
	○		출입국 사실 증명원	본인	•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거주지역 또는 거주기간 확인이 필요한 경우 ※ 기록대조일을 본인 생년월일~입주자모집공고일로 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
	○		혼인관계증명서	본인	• 본인 및 배우자 성명, 주민등록번호 (뒷자리 포함) 전부 공개, "상세"로 발급
	○		건강보험 자격 득실 확인서	본인 및 19세 이상 세대원	• 공급신청자 및 만 19세 이상 성년자인 세대원 전원이 제출(발급처 : 국민건강보험공단) ※ 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3년 이상의 변동사항, 주민등록번호 포함하여 "상세" 발급(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함)
	○		소득증빙 서류	본인 및 19세 이상 세대원	•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공급신청자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서류(단, 배우자 분리세대는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된 만 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서류) ※ "생애최초특별공급" 소득증빙서류 참조
	○		비사업자 확인각서	본인 및 19세 이상 세대원	•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 • 건본주택 비치
		○	신청자격 입증 서류	근로자	• 직인이 날인된 재직증명서(발급처 : 해당직장)
		본인 및 19세 이상 세대원		• 사업자등록증 사본(발급처 : 세무서)	
		본인 및 19세 이상 세대원		•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(납부내역증명 포함)	
		○	소득세 납부 입증서류	과거 5개년도 소득세 납부내역	• 소득금액증명원 및 납부내역증명서(발급처 : 세무서) •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(발급처 : 해당직장) •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또는 일용근로자용 소득금액증명 및 납세사실증명(발급처 : 해당직장 또는 세무서)
		○	주민등록표등본	배우자	• 배우자가 분리되어 있는 경우 • 주민등록번호 (뒷자리 포함),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"전체포함"으로 발급
		자녀		• 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본인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• 주민등록번호 (뒷자리 포함),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"전체포함"으로 발급	
		○	기본증명서	자녀	• 자녀의 출생 관련 일자 확인 필요 시
		○	가족관계증명서	배우자	• 배우자의 전혼자녀 확인 시(본인의 주민등록표 상 등재된 배우자의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)
	피부양 직계존속	• 성명, 주민번호(뒷자리 포함)를 표기하여 "상세"로 발급			
	○	혼인관계증명서	직계비속	• 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 아닌 분이 만 18세 이상의 자녀를 미혼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	
	○	기타서류	본인 및 세대원	• 자격요건이 적격함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(무주택 여부 등)	
부적격 통보를 받은자	○	건물 등기사항 전부증명서		•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 (가옥대장등본 포함)	
	○	무허가건물확인서			
	○	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			
	○	해당 기관의 당첨 사실 무효확인서 등 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			

※ 상기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(2021.12.17(금))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, 모든 발급 서류는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(전체) 등을 포함하여 발급하여야 합니다.  
 ※ 주민등록표 등·초본 발급 시 "세대주 성명 및 관계"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배우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"세대주 성명 및 관계"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.  
 ※ 특별공급 청약 시 가정항목 등 청약자격을 확인(검증)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 신청을 받으며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 체결 시 주민등록표 등·초본, 가족 관계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 받아 주택 공급 신청내용과 청약자격을 대조한 후 청약신청 내용과 청약자격이 일치할 경우에 계약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 신청 시 유의하시길 바랍니다.  
 ※ 상기 서류 외 당첨자격 확인을 위하여 사업주체에서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.

**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 기준(세대별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 및 성년자인 세대원 전원의 소득)**

공급유형	구분	2020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						
		3인 이하	4인	5인	6인	7인	8인	
소득 기준 구분	우선공급 (기준소득, 50%)	130% 이하	7,839,208원	9,222,467원	9,222,467원	9,611,741원	10,111,430원	10,611,119원
	일반공급 (상위소득, 20%)	130% 초과~ 160% 이하	7,839,209원 ~9,648,256원	9,222,468원 ~11,350,728원	9,222,468원 ~11,350,728원	9,611,742원 ~11,829,835원	10,111,431원 ~12,444,837원	10,611,120원 ~13,059,838원
추첨제 (30%)	소득기준 초과 / 자산기준 충족	160%초과, 부동산가액 (3.31억원)충족	9,648,257원~	11,350,729원~	11,350,729원~	11,829,836원~	12,444,838원~	13,059,839원~
	1인 가구	160%이하, 부동산가액 (3.31억원) 충족	~9,648,256원	~11,350,728원	~11,350,728원	~11,829,835원	~12,444,837원	~13,059,838원

※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→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+ {1인당 평균소득(384,376) \* (N-8)\*100% 기준} ※ N → 9인 이상 가구원수  
 ※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세대주 및 성년인자(만19세 이상)의 합산 소득입니다(단, 세대원의 실종·별거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의 대상에서 제외함).  
 ※ 월평균소득은 연간소득÷근무월수를 말하며, 연간소득은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의 총급여액(21월) 및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상의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고,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며, 근무월수는 근로자인 경우에는 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를,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.  
 ※ 가구원 수는 무주택 세대구성원 전원으로 한정하되,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(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)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가구원수에 포함함.

**생애최초 소득입증 제출서류**

해당자격	소득입증 제출서류	발급처	
근로자	일반근로자	① 재직증명서 (직인날인) ②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(원본, 직인날인) 또는 전년도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서 (원본) - 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: 전년도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(직인날인)	① 해당직장 ② 해당직장/세무서
	금년도 전직자 / 신규취업자	① 재직증명서 (직인날인) ② 금년도 월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(직인날인)	①, ② 해당 직장
	전년도 전직자	① 재직증명서 (직인날인) ②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(원본, 직인날인) ※ 근무처별 소득명세표상* 주(현) 총 급여 금액을 재직증명서 상 근무기간으로 나누어 월평균 소득을 산정	①, ② 해당 직장
	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지 않는 자 (건강보험증상 직장가입자만 해당)	① 재직증명서 (직인날인) ② 총급여액 및 근무기간이 기재된 근로계약서 (직인날인) 또는 월별급여명세표(근로소득지급조서) ※ 근로계약서 및 월별급여명세표에 사업자의 직인 날인 필수	①, ② 해당 직장
자영업자	일반과세자 / 간이과세자 / 면세사업자	① 사업자등록증 (사본) ②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(원본)	①, ② 세무서
	간이과세자 중 소득세 미신고자	①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증 (사본) ※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금액증명 (원본) 제출	① 세무서
	신규사업자 등	① 사업자등록증 (사본) ② 국민연금보험료납입증명서 및 연금정산용 가입내역확인서 또는 최근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(부분)	① 세무서 ② 국민연금관리공단
	법인사업자	① 법인등기부등본 (사본) 및 사업자등록증 ②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(원본)	① 등기소 ② 세무서
	보험모집인, 방문판매원	① 전년도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(원본) 또는 전년도 사업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 (원본) 또는 당해회사의 급여명세표 ② 위촉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	① 세무서 ② 해당 직장
국민기초생활 수급자	① 수급자 증명서	① 주민센터	
비정규직 근로자 / 일용직 근로자	① 계약기간 및 총급여액 명시된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급여명세표 또는 근로소득지급조서(비고 : 직인날인) ※ 상기 서류가 없는 경우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 및 연금정산용 가입내역확인서	① 해당 직장 ※ 국민연금관리공단	
무직자	① 비사업자 확인 각서 (견본주택 비치) ※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에 소득 (근로 또는 사업소득 등)이 있는 경우에는 전년도 1월 1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총소득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	① 견본주택	

※ 상기 제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(2020.12.17(금))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, 모든 발급 서류는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(전체) 등을 포함하여 발급하여야 합니다.  
 ※ 해당직장 및 해당기관에서 발급되는 서류에는 「직인 날인」이며 제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. (단, 공인인증서를 통한 인터넷 발급의 경우 제외)  
 ※ 상기 서류 외 당첨자격 확인을 위하여 사업주체에서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.  
 ※ 기타 본 입주자모집공고 상에 표시되지 않는 내용에 대해서는 '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 운영지침' [국토교통부고시 제2020-703호, 2020. 9. 29. 일부개정]에 따릅니다.